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 구체화〉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2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1.
3. 회 부 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 구체화

개정안은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u> <u>1.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u> <u>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 활동</u> <u>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 활동</u> <u>4.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분 및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나 이동</u>

현행	개정안
<u>제16조의4</u>(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생략) <u>제16조의5</u>(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생략) <u>제16조의6</u>(소송지원) (생략)	5. <u>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u> 6. <u>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u> ② <u>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6조의5</u>(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u>제16조의6</u>(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현행 제16조의5와 같음) <u>제16조의7</u>(소송지원) (현행 제16조의6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6¹⁾의 규정을 근거로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²⁾을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 손해배상 한도액, 손해배상 요건 등이

1)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참고로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처리함.

단체보험 가입 주체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 자료(2025. 3월 말 기준)에 따르면 소방청 및 모든 시도가 소방공무원을 피공제자로 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음.

보장하는 손해의 내용에 소방공무원 활동에 특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1) 소방청이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에는 소방공무원 활동에 특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⁴⁾, 2) 서울시⁵⁾와 그 밖의 시도⁶⁾는 “특별약관”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공무

3)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공무원 책임보험 외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더 가입하고 있음. 이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원(화재진화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항공대원 등)은 행정 관련 업무만이 아닌 현장 소방활동도 수행하기에, 현장활동 중 부주의, 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충분한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임.

소방청에 따르면, 연혁적으로는, 2017.7.26. 소방청이 개청한 후 중앙119구조본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먼저 추진하였고(2017.12.28.), 이후에 2020년부터 소방청 소속 전체 공무원이 공무원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설명함.

* 공무원책임보험에서의 공무 :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 및 기타 행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4) 소방청은 56개 중앙행정기관을 통합해서 인사혁신처(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통합계약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 중이고,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직+소방직으로 통합해서 배상보험에 가입 중임.

※ 소방청소속 공무원 공무원책임보험 보통약관 중 관련 내용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형사방어비용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보상관련 용어 가. 보험사고: 피보험자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소방공무원 특별약관(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 소방공무원 특별약관

제3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를 말합니다.

6) 소방공무원 특별약관(서울시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시·도 통합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약관」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고 있음.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1)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1청구당 3천만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은 2억원), 2)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1청구당 2억원, 3) 그 밖의 시도 소속 공무원은 1청구당 5억원임.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사가 보상할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니다) 제19조(보상하는 손해)의 공제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보건의료직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를 포함합니다)로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청구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2.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범죄인지 이전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
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의 참고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같습니
다)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용어정의>

공무	1. 지방자치법 제9조,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2. <u>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u> 3. 보건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	--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현황>

(2025. 3. 31. 현재)

구 분	소방청 공무원 책임보험	중앙119 구조본부 배상책임	서울시 배상책임	경기도 배상책임	기타시도배 상책임
소방공무원 활동에 특화된 배상 내용 포함 여부	미포함 ⁸⁾	○ ⁹⁾	○ ¹⁰⁾	○ ¹¹⁾	○
손해배상 한도(1건당)	3천만원	2억원	5억원	2억원	5억원
보험자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	서울소방 재난본부	경기도청	시·도 소방 본부
피보험자	소속공무원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공무원	서울소방 공무원 등 ¹²⁾	소속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직 등
소방공무원 지부담 여부	없음	20만원	없음	없음	없음
보험료 재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제세	중앙119 구조본부 기본경비 -공공요금제세	시비	후생복지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도비 (공공운영비)
보험 계약 기간	1년 단위	1년 단위	1년 단위	1년 단위	1년 단위

(자료: 소방청)

- 7) 참고로 소방청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단체보험 내용을 매년 개편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공무원 개인 부담금을 없애고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1청구당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고 설명함.

구 분		2020년 ~ 2024년			2025년
피보험자 보험료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자, 공무직 등 1인당 15,000원 ~ 49,000원				동 일 1인당 16,500원 (24년과 동일)
	민사	1청구 당 시도별 상이			1청구 당 5억원
보장 금액	형사	방어비용	사고 당 3천만 원		피공제자 1인 당 5천만원
		과실범	유죄 확정시 지원		당연퇴직 사유 제외하고 지원
		특정 범죄	불가(환수 조치) 내란, 외환, 공무방해 등 특정범죄의 경우 지원 불가		무죄 확정시 지원
공무원 개인 부담금	일부 있음				없 음
절차	시·도별 가입				전 시·도 통합가입(절차 간소) ※ 서울, 경기 별도 가입

(자료: 소방청)

- 8) 소방청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통합계약으로 추진하는 국가기관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 중임.
- 9) [중앙119구조본부] 형사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Criminal Case Defense Cost Clause) 제1조에 따라 본 보험의 1청구당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업무상 과실 행위,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신체 상해를 유발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체포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서비스 비용, 상대방(고소인)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방어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에 대해 보상

한편, 배상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보장 내용이 유사하나,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경과실의 경우에만 배상보험에서 보장하고 있고,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경과실 또는 중과실 구분 없이 과실에 대하여 배상보험에서 보장하는 등 배상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민사책임 보장 범위>

구 분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서울시	경기도	기타 시도
민사책임 보장범위 관련 계약서 상의 문구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및 기타 행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업무상 과실 행위,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신체 상해를 유발한 경우	소방활동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		
개정안에 따른 민사책임 보장 범위 포함 여부	소방활동 (제16조제1항)	○	○	○	○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제1항)	○	○	○	○	○
	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3제1항)	○	○	○	○	○
	강제처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피난명령 (제26조제1항)	○	○	○	○	○
	긴급조치 (제27조제1항)	○	○	○	○	○

- 10)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특별약관 제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해 보상함
- 11) [경기도] 타 시도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분리하여 가입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직+소방직으로 통합 가입 중임.
- 12) 서울소방공무원 등에는 ①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와 보조근무자, ② 소방활동중사명령 등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등의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사람, ③ 소방기관 장의 명령에 의해 소방업무에 임하는 자가 포함됨.

구 분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서울시	경기도	기타 시도
민사책임 보장요건	경과실	○				
	중과실	×				
	과실 (경·중 구분없음)		○	○	○	○
	고의	×	×	×	×	×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위한 배상보험 가입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그 실익을 판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

현재 소방청 및 일부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통합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위한 배상보험 가입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 모든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16조의6¹³⁾의 규정을 근거로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및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통합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소방청 소속 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공무원 제외)은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들은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조문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현재 소송지원은 현행법 제16조의6을 근거로 하여 공제 등에 가입한 상황으로, 개정안 제16조의4의 규정과 같이 법문에 명시한다면 소방공무원 보험 가입의 법률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개정안은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같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배상보험에서 보장

13)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그러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서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1항 및 제2항)¹⁴⁾, 이는 “그 흠결의 정도가 중대한 것이거나 또는 순전히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미 기관행위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¹⁵⁾”이라는 점에서 소방공무원 배상보험의 목적에 벗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면, 소방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소

14)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15) 김동희, 최규영, 행정법 1(제26판), 박영사, 2021., 578-579면.

방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셋째, 소방공무원 배상 보험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배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강제처분, 피난명령, 긴급조치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소방공무원 배상 보험은 배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소방활동 등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배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배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열거한 것 외에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활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¹⁶⁾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

16) 소방청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배상보험 적용범위는 개정안에 따른 소방활동 외에 다음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국민
- 제24조에 다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
- 제27조제2항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참고

소방활동 관련 손해배상 현황¹⁷⁾(2025.4.1. 기준)

(자료: 소방청)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건)	금액 (천원)	건수 (건)	금액 (천원)	건수 (건)	금액 (천원)	건수 (건)	금액 (천원)	건수 (건)	금액 (천원)
합계	85	151,501	126	448,870	135	347,060	109	1,161,412	130	378,070
중앙	-	-	-	-	-	-	-	-	-	-
서울	23	56,378	38	157,412	28	65,991	19	24,679	40	107,507
부산	11	17,501	5	2,367	6	5,931	6	120,280	3	2,530
대구	2	2,139	4	4,380	7	11,168	2	1,900	5	14,127
인천	1	650	9	19,386	9	23,630	12	13,987	9	40,925
광주	1	2,248	8	3,109	4	2,955	6	51,030	5	37,858
대전	2	6,265	2	754	3	3,006	2	483	5	5,799
울산	1	2,400	3	4,512	2	2,676	1	400	-	-
세종	-	-	2	5,390	-	-	1	1,500	1	4,261
경기	29	49,300	36	97,546	36	77,309	28	36,377	35	103,199
강원	3	2,900	3	3,181	6	14,605	3	9,080	3	3,300
충북	5	4,526	4	20,826	18	32,281	7	18,291	2	11,306
충남	-	-	2	51,517	4	11,698	5	5,125	4	9,959
경북	1	175	2	7,540	2	985	3	17,160	2	8,189
경남	-	-	5	59,960	2	78,387	8	853,224	7	15,860
전북	5	3,128	1	140	2	3,676	1	3,511	3	2,061
전남	-	-	1	10,000	4	5,148	3	2,880	3	8,376
제주	1	3,891	-	-	1	810	-	-	1	1,000
창원	-	-	1	850	1	6,804	2	1,505	2	1,813

17) 피해자가 손해배상 관련 사고발생 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사고 접수 후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고 처리 및 배상금 지급한 내용 및 보험사에서 지급 불가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민사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내용 포함